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의 유보목록은 제9.12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한국의 기준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4조(시장접근)

라. 제10.5조(현지주재)

마. 제9.9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 의무**는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제9.12조제1항가호 및 제10.6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조치<sup>1</sup>**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치가 운영되거나 시행되는 정부수준의 변경은 그 자체로는 제9.12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에 언급된 의무에 대하여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그 조치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라.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들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않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2조제1항가호 및 제10.6조제1항가호에 따라, 그리고 제9.12조제1항다호 및 제10.6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5.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 (내국민 대우) ·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외국인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7. 이 부속서에 포함된 유보목록은 이 협정의 발효 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서비스의 공급 및 유엔 잠정 중앙품목분류에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분류된 것 외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1조제3항에 따라, 제10.4조(시장접근)에 대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은, 유보내용 요소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주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와 제10.5조(현지주재)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10.5조(현지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10.2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1. 분야	건설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5366호, 2018. 2. 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1247호, 2016. 1. 27.)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한국에서 건설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2. 분야 건설기계 및 장비 관련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법률 제16134호, 2018. 12. 3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대통령령 제30085호, 2019. 9.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국토교통부령 제659호, 2019. 10. 18.)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건설기계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 대여 · 정비 · 수리 · 판매 및 폐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3. 분야** 운송 서비스 – 자동차 정비 · 수리 · 판매 · 폐기 및 검사 서비스, 자동차등록 번호판발급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44조, 제45조 및 제53조(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111조(국토교통부령 제647호, 2019. 8. 20.)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국토교통부령 제621호, 2019. 4. 23.)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자동차관리 서비스(중고차판매 · 정비 · 수리 및 폐기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고, 각 경우에 맞게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수리시설”로 지정되어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등록번호판 제작 · 교부 및 봉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4. 분야	유통 서비스 – 담배 및 주류의 도·소매 유통
관련 의무	<p>시장접근(제10.4조)</p> <p>현지주재(제10.5조)</p>
조치	<p>담배사업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법률 제14839호, 2017. 7. 26.)</p> <p>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대통령령 제29015호, 2018. 7. 3.)</p> <p>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7조의3(기획재정부령 제700호, 2018. 12. 7.)</p> <p>주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법률 제16125호, 2018. 12. 31.)</p> <p>주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9531호, 2019. 2. 12.)</p> <p>국세청고시 제2018-20호(2018. 6. 29.) 및 제2019-11호(2019. 4. 1.)</p>
유보 내용	<p><u>국경 간 서비스 무역</u></p> <p>담배 도매(수입 포함) 또는 소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p> <p>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가 되어야 한다.</p> <p>주류 도매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p>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조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 유보내용

외국인은 1) 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또는 2)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6. 분야 사업 서비스 – 안경사(안경사 및 검안)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인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1인은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조치 약사법 제42조 및 제45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약사법 시행령 제31조의2(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대통령령 제24479호, 2013. 3. 23.)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및 제12조(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10호, 2015. 12. 9.)

의료기기법 제15조(법률 제16402호, 2019. 4. 2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총리령 제1567호, 2019. 10. 2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총리령 제1560호, 2019. 7. 31.)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대통령령 제29973호, 2019. 7. 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총리령 제1543호, 2019. 6.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법률 제16434호, 2019. 4. 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대통령령 제30157호, 2019. 10.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총리령 제1561호, 2019. 9.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법률 제16401호, 2019. 4. 2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9763호, 2019. 5. 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총리령 제1546호, 2019. 6. 19.)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법률 제15942호, 2018. 12. 11.)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총리령 제1547호, 2019. 6.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화장품법 제3조(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총리령 제1566호, 2019. 10. 15.)

## 유보 내용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도매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이 다음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입업 면

허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건강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를 포함한다)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 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나. 식품공급 서비스

다. 식품검사 서비스

라. 마약류 도소매 유통 서비스, 또는

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을 포함한다) 공급 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한다.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약류 도 · 소매 유통업은 관계당국의 허가가 요구된다.

## 8. 분야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약사법 제20조 및 제21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 유보내용

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약국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인은 1개의 약국만 설치하고, 회사의 형태로 약국을 설립하지 않는다.

9. 분야	운송 서비스 – 철도운송 및 부수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철도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12조(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법률 제13692호, 2015. 12. 29.)  철도건설법 제8조(법률 제13490호, 2015. 8.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및 제38조(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12995호, 2015. 1. 6.)
유보 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u>  현행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개괄적으로 명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국민이 설립한 한국 국적의 법인(한국 국적의 주주가 주식의 100퍼센트를 소유한 법인)만이 2005년 6월 30일 또는 그 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만이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정부소유 철도시설(고속철도를 포함한다)을 유지 및 보수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은 철도건설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10.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여객운송 서비스(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는 제외 한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법률 제13485호, 2015.8.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27109호, 2016. 4.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 4. 21.)

궤도운송법 제4조(법률 제13476호, 2015. 8. 11.)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3조(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택시와 정기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제외한 도로여객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11. 분야 운송 서비스 – 국제해상화물운송 및 해상보조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해운법 제24조 및 제33조(법률 제14748호, 2017. 3. 21.)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도선법 제6조(법률 제13265호, 2015. 3. 2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 및 제31조(법률 제13453호, 2015. 7. 31.)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제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또한 한국에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해운중개 서비스, 해상대리 서비스, 선박유지 서비스 및 선박관리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어야 한다.

한국 국민만이 해상도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 12.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운송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 및 제135조(법률 제14114호, 2016. 3. 29.)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78조, 제278조의3, 제296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 유보 내용 투자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정기 또는 부정기 국내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한국 국적의 항공사로서 국제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  
립된 기업

항공기를 소유한 인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인  
은 해당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가호부터 마호까지 열  
거된 인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 13.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사용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항공법 제3조, 제6조 및 제134조(법률 제14114호, 2016. 3. 29.)

항공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2(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 유보 내용 투자

항공기사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다.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라. 가호부터 다호까지 언급된 인이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기업, 또는

마. 외국 국민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  
선임임원)이거나 외국 국민이 임원의 절반 이상인 한국법에 따라 설  
립된 기업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항공기사용 서비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목적이 아닌 요청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이며,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지도제작, 항공조사, 항공살포, 항공촬영 및 그 밖의 항공농업활동, 항공순찰, 글라이더 견인, 낙하산 투하, 항공건설, 헬리콥터를 이용한 별채 및 관측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14. 분야      운송 서비스 – 도로운송지원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제37조(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

도로교통법 제36조(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29720호, 2019. 4. 30.)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버스터미널 운영 서비스 또는 자동차 견인 및 보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각 경우에 맞게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경찰서장 또는 시장 및 군수의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5. 분야 쿠리어 서비스

조치 항공법 제139조(법률 제14114호, 2016.3.29.)

항공법 시행규칙 제306조(건설교통부령 제532호, 2006.8.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법률 제13812호, 2016. 1. 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4조 및 제41조의2(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 유보내용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업서류송달 서비스를 포함한 국제 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 대상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인은 피  
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 16. 분야      통신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21조 및 제87조(법률 제13823호, 2016. 1. 27.)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법률 제5385호, 1997. 8. 28.)
	전파법 제13조 및 제20조(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 유보 내용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을 위한 등록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된다.

기간공중통신서비스 허가는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 모두를 합하여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그 법인에게 부여되거나 그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는다.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를 합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KT의 경우,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외국 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이 KT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허가 받은 공중통신 서비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경 간 공중통신 서비스를 한국으로 공급할 수 없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의제외국인이라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최대 주주이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이 공중통신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법률 제14113호, 2016.3.29.)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이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법률 제14113호, 2016.3.29.)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다. 그리고

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법률 제13586호, 2015. 12. 22.)의 규정에 따라, 전송설비란 송신 지점과 수신 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 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17. 분야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 서비스

##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 조치 공인중개사법 제9조(법률 제15724호, 2018. 8. 1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국토교통부령 제570호, 2018. 12. 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법률 제12018호, 2013. 8.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 (대통령령 제26632호 2015. 11. 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국토교통부령 제303호, 2016. 4. 21.)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부동산중개 서비스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8. 분야 의료기기 관련 소매, 리스, 임대 및 수리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3698호, 2015. 12. 2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7조(총리령 제1567호, 2019. 10. 22.)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의료기기와 관련된 소매, 리스, 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19. 분야 대여 서비스 – 자동차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법률 제15781호, 2018. 9.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4조(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0. 분야 과학조사 서비스 및 해도 제작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조치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및 제8조(법률 제14605호, 2017. 3.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한국 국민 또는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않거나 지배하지 않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 21. 분야

##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 관련의무

### 시장접근(제10.4조)

###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및 제58조의22(법률 제15974호, 2018. 12. 18.)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15151호, 2017. 12. 12.)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15150호, 2017. 12. 12.)

### 유보내용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형태의 법적 실체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그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공증인은 그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 서비스 – 외국법자문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 22.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노무자문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6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9조의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0조의2(고용노동부령 제185호, 2017. 4. 19.)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노무사만이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무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2인 이상(설립자인 자연인을 포함한다)의 한국 공인노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23.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변리사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만이 변리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리사만이 개인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인은 이러한 형태의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다.

변리사 1인은 1개의 사무소만 설립할 수 있다.

## 24.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7조, 제12조 및 제23조(법률 제16181호, 2018. 12.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법률 제15514호, 2018. 3. 20.)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한국에 설립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유한회사)만이 회계 및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공인회계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 한국 공인회계사만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감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 25. 분야 전문직 서비스 – 세무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세무사법 제6조, 제13조, 제16조의3 및 제20조(법률 제16103호, 2018. 12. 31.)

법인세법 제60조(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소득세법 제70조(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및 제22조(국세청훈령 제2307호, 2019. 7. 1.)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한국에 설립한 세무사무소,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를 포함한 세무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세무사 등록자가 아닌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세무조정반 또는 세무법인(유한회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중 전문직 서비스 – 외국공인회계사 유보항목에서의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 26. 분야      전문직 서비스 – 통관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관세사법 제3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8, 제17조의13, 제19조 및 제25조(법률 제16094호, 2018. 12. 3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관세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관세사, 그러한 관세사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관세사법」에 따라 통관업에 종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통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통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7.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산업안전, 보건기관 및 자문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52조의4(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136조의8(고용노동부령 제250호, 2019. 4. 19.)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리 또는 진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및 지도,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지도 등 산업안전 또는 위생 자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28. 분야**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기술 서비스 –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건축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건축사법 제23조(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대통령령 제30075호, 2019. 9. 10.)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3조(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 1.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법률 제13852호, 2016. 1.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기술사법 제6조(법률 제15240호, 2017. 12.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법률 제15733호, 2018. 8. 1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법률 제16414호,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29918호, 2019. 6. 2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국토교통부령 제632호, 2019. 7.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온천법 제7조(법률 제14795호, 2017. 4.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법률 제15366호, 2018. 2. 9.)

#### 유보 내용

####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  
건축 서비스, 또는 조사 및 지도 제작 서비스(지적측량 및 지적도제작 서비스  
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외국 건축사와 한국 건축사 자격자  
간의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29. 분야 사업 서비스 – 전광판방송 서비스 및 옥외광고 서비스

조치 방송법 제13조 및 제73조(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44조(대통령령 제29895호, 2019. 6. 25.)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국민은 전광판방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전광판방송프로그램의 최소 20퍼센트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한 비상업용 공익광고물로 편성되어야 한다.

옥외광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30. 분야 사업 서비스 – 직업알선 서비스, 인력 공급 및 근로자파견 서비스 및 선원교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33조(법률 제16413호, 2019. 4. 30.)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3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및 제36조(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법률 제14790호, 2017. 4.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대통령령 제30177호, 2019. 10. 2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고용노동부령 제234호, 2018. 12. 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선원법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42조 및 143조(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5조(법률 제13272호, 2015. 3. 27.)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근로자공급 서비스 또는 근로자파견 서비스(임시 파견)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투명성 목적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32개 사업으로 한정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라 대상 사업 유형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관리사업자 및 「선원법」에 따라 규제되는 해상업무 및 어업 관련 조직이나 기관만이 선원인력공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은 한국 「상법」에 명시된 회사여야 하고 「해운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만이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31. 분야 경비 서비스

조치 경비업법 제3조 및 제4조(법률 제16316호, 2019. 4. 16.)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대통령령 제29611호, 2019. 3. 12.)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19. 4. 23.)

## 유보내용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에서 경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에서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된다.

### 가. 시설경비

#### 나. 호송경비

### 다. 신변보호

라. 기계경비, 그리고

### 마. 특수경비

32. 분야      간행물 관련 유통 서비스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조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3(법률 제16065호, 2018. 12. 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8호, 2019. 6. 25.)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국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은 필요 시 심의의 대상이 된다.

33. 분야      운송 서비스 –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항공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법률 제13810호, 2016. 1. 19.)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04조 및 제305조(국토교통부령 제308호, 2016. 5. 11.)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항공기 정비 및 수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sup>2</sup>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사무소 개설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한국 항공기에 대하여 유지 및 정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되지 않는다.

## 34. 분야 교육 서비스 – 고등교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조치** 고등교육법 제3조, 제4조, 제32조, 제42조 및 제43조(법률 제16330호, 2019. 4.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30131호, 2019. 10. 22.)

사립학교법 제3조, 제5조, 제10조 및 제21조(법률 제16310호, 2019. 4. 16.)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3(대통령령 제30108호, 2019. 10.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1조 및 제2조(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사립 고등교육기관 이사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출연한 경우, 그러한 교육기관의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만이 외국 국민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재산” 이란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고등교육기관의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의 협약을 받은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에 열거된 기관의 유형은 제외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의학·약학·수의학·한의학·의료기사 분야 및 유아·초등·중등 교원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그리고 수도권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 분야의 연간 총 학생정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수도권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다.

한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만이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중앙정부만이 방송을 통하여 대중에게 고등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35. 분야 교육 서비스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관련 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32조 및 제36조(법률 제16413호, 2019. 4. 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고용노동부령 제252호, 2019. 4. 23.)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 36. 분야 수의 서비스

관련 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수의사법 제4조, 제17조, 제22조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법률 제16546호, 2019. 8. 2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 및 제37조의12(법률 제16209호, 2019. 1. 8.)

민법 제32조(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동물진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고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의 또는 수생 동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산생물진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사무소를 한국 내에 설치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소지한 인만이 수산생물 질병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7. 분야** 환경 서비스 – 폐수처리 서비스, 폐기물관리 서비스, 대기오염처리 서비스,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및 유독화학물질관리 서비스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물환경보전법 제62조(법률 제15832호, 2018.10.16)

폐기물관리법 제25조(법률 제16318호, 2019. 4. 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법률 제16266호, 2019. 1. 1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5845호, 2018. 10. 1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법률 제15662호, 2018. 6. 12.)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지하수법 제29조의2(법률 제15624호, 2018. 6. 8.)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분야란에 열거된 환경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한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공연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공연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2019. 10.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법무부령 제952호, 2019. 6. 11.)

## 유보내용

한국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초청하여 한국 내에서 공연하도록 하려는 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39. 분야 뉴스제공(뉴스통신사)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	---

조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16조 및 제28조(법률 제16052호, 2018. 12. 2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대통령령 제30059호, 2019. 8. 27.)

전파법 제20조(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 유보내용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사와 같이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일은 한국에서 뉴스통신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

###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 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인에 따라

## 설립된 기업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집인, 또는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 외국 국민

나.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40. 분야 생물학적 제제 제조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조치 약사법 제42조(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총리령 제1544호, 2019. 6. 12.)

유보내용 투자

헬액제제 제조자는 한국의 헬액관리기구로부터 원료헬액 물질을 조달해야 한다.

#### 41. 분야 정기 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조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9조(법률 제15822호, 2018. 10. 1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대통령령 제30058호, 2019. 8. 27.)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회사의 발행인 또는 편집장은 한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나. 한국 국민이 아닌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다. 외국인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외국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지사 또는 지국을 한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편집된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한국 내에서 원어로 인쇄 및 배포할 수 있다.

42. 분야	유통 서비스 – 농축산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양곡관리법 제12조(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축산법 제30조 및 제34조(법률 제16550호, 2019. 8. 27.)  종자산업법 제42조(법률 제14483호, 2016. 12. 27.)  사료관리법 제6조(법률 제16123호, 2018. 12. 31.)  인삼산업법 제20조(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및 제43조(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14조 및 제20조의2(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5호, 2018. 12. 24.)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외국인은 육류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축산업협동조합만이 한국 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지방정부만이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만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2조(내국민 대우) 및 제10.4조(시장접근)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관세율 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3. 분야 에너지 산업 –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sup>3</sup>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대통령령 제30118호, 2019. 10. 8.)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제5조(법률 제16479호, 2019. 8.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0170호, 2019. 10. 29.)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2(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7호, 2018. 7. 6.)

재정경제부고시(제2000-17호, 2000. 9. 28.)

증권업감독규정 제7조의6(금융위원회고시 제2008-16호, 2008. 7. 3.)

유보내용 투자

한국전력공사 발행주식의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발전설비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한국 영역 내 전체 발전설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송전, 배전 및 전력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50퍼센트

<sup>3</sup>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만이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44. 분야      에너지 산업 – 가스 산업

관련 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sup>4</sup>

조치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법률 제16191호, 2018. 12. 31.)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19. 7. 3.)

유보 내용      투자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sup>4</sup> 부속서 II의 한국 유보목록의 아홉 번째 유보항목 가항은 이 유보항목에 적용되지 않는다.

#### 45. 문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영화상영 서비스

##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 시장접근(제10.4조)

조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법률 제 16061호, 2018. 1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 유보 내용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한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